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4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양경숙・이상민・임호선

강훈식 • 이개호 • 이장섭

김영호 · 이탄희 · 민형배

윤재갑·안민석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총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 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). 법률 제 호

###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"입주자등을"을 "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결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층간소음의 방지 등) ①	제20조(층간소음의 방지 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<u>입</u>	⑥ <u>科</u>
<u>주자등을</u> 대상으로 층간소음의	7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
예방,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	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
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	
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	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
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, 조	른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
정,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	결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
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	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
<u>다.</u>	<u>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</u>
	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
	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	관리규약으로 정한다.